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의3서식] <개정 2017. 7. 26.>

제　　호

승강기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선정서

상　　호:
등 록 번 호:
주　　소:
분　　야: 승강기 유지관리
유지관리범위:　　대 이하
유 효 기 간:　　년　　월　　일부터　　년　　월　　일까지

위 업체는 우수한 유지관리품질 시스템을 구축하여 높은 유지관리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승강기 유지관리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므로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품질 우수업체로 선정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행정안전부장관　　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150g/㎡]